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5억원”을 “7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 같다”를 “50억원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.

제6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8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<1-3>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(이하 이항에서 “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”이라 한다.)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.

1.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: 100분의 5 이상
(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)
2.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: 100분의 60 이상
3. 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(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)이거나, 총대출대비 신용대출비율이 100분의 10 이상(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대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“100분의 100이하”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“100분의 90이하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동일인대출한도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<u>5억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<u>다음과 같다. 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<u>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</u> : 30억원</p> <p>2. <u>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</u> : 50억원</p> <p>제12조(건전성 비율)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</p>	<p>제6조(동일인대출한도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7억원</u>-----.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5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제12조(건전성 비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4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예탁금,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(이하 "예대출"이라 한다) : 100분의 80 이하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10
0 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<1-3>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(이하 이항에서 "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"이라 한다.)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.
1.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

산대비 순자본비율 : 100분의 5 이상(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)

2.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: 100분의 60 이상

3. 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(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)이거나, 총대출대비 신용대출비율이 100분의 10 이상(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)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대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
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“100분의 100이하”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“100분의 90이하”로 한다.